

파주시 공고 제 2021-1622 호

##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6일

파 주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2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‘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’ 및 ‘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’에 따라 계약서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 사무 의회 동의 조항 변경 /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신설 (안 제4조)
- 나.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(안 제12조)
- 다.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정비 (안 제15조)

### 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### 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1년 8월 5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>) ‘입법예고’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기획예산과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5983 / 팩스 031-940-4059 / 이메일 [jina114@korea.kr](mailto:jina114@korea.kr)

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